

의안번호	제 541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1월 6일

#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

의안 번호	5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월 6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오송 침복단지의 핵심연구시설인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6.11. 건립 설계비가 예산배정 되고 2017년 충청북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(현재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오송읍 연제리 682번지 토지)반영됨에 따라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의 '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'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
-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 부지를 임상시험센터 건립·운영 기관인 '충북대학교 병원' 또는 '오송 침복재단'에 무상 사용을 허가 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심의사항

- 위치 : 충청북도 오송읍 연제리 682번지(토지)
- 면적 : 14,545.3m<sup>2</sup>
- 사용목적 : 임상시험센터 건립
  - 사용기관 : 충북대학교 병원 또는 오송 침단의료산업진흥재단
  - 사용기간 : 20년(침복단지 특례조항)
-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
 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 감면) 제1항4호

## 3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- 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, 제2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

#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

## 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오송읍 연제리 682번지(첨단임상시험센터 내)
- 규 모 : 부지 14,545.3m<sup>2</sup>, 건축면적 6,600m<sup>2</sup>(지하 1층, 지상 4층)  
※ 임상시험병상 : 60병상
- 사업기간 : 2016년 ~ 2019년(3년)
- 사 업 비 : 301억원(국비278, 도비 11.4 청주시 11.4)
- 주요기능
  - 침복단지내에서 개발되는 신약 임상시험(1상 중심)
  - 국내외 임상 정보 및 기관 네트워크 등 임상의 체계적,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

## □ 추진경과

- '16. 1. : 설계비 8.3억원 국비 반영되었으나 기재부에서 미배정
- '16. 2. :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MOU(재단,충북대병원,도)
- '16. 4. :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위원회 개최(건립 자문)
  - 건립 후 운영주체인 충북대병원에서 건립위원회를 주도
- '16. 8. : 기재부에서 건립방침 변경(국가⇒지자체) \*예산변경
- '16. 11. : 임상시험센터 건립 설계비 예산배정(복지부⇒충북도)

## □ 향후계획

- 임상시험센터 건립·운영에 관한 세부 협약 체결(공증,공고)
  - ①충청북도 ②청주시 ③침복재단 ④충북대병원 간 협약체결
- 부지매입 및 계약 : 한국토지공사, 충북도, 청주시
- 건립·운영기관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('17.2.)
- 임상시험센터 건립 추진('17.3.~)

## □ 기대효과

-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팅 센터 (조정자)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임상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유 가능
- 첩복단지 내 핵심시설 확충을 통하여 신약개발의 전주기적 지원 가능
- 첩복단지가 임상관련 R&D기능 강화되면서 연구기관 집적화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- 제18조(국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·공유 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 의료 연구개발기관에 사용·수익 허가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국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- 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3.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
-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#### 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15.7.20., 2016.7.12.>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**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**